##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2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 송기헌 · 민홍철 · 박 정

백승아 • 윤종군 • 이원택

이재관 · 정성호 · 정준호

조 국 • 주철현 • 한병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

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  |  |
|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  |  |
| 에 관한 법률             | 에 관한 법률            |  |  |
|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 |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  |  |
| 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     |                    |  |  |
|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  |  |
| 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1의2.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  |  |  |
|                     | 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  |  |
|                     |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                     |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    |  |  |
|                     | <u>부</u>           |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